경영유의사항 공개

1. 금융회사명 : 시너지투자자문㈜

2. 조치일 : 2019. 7. 8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

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금융 위원회 사전 보고 등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자본시장법) 제42조 각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도

시너지투자자문㈜은 201X.XX.XX. OOOO증권㈜과 체결한 '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 업무 위·수탁 계약'을 금융위원회 보고 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에 미비점이 있었는바,

업무위탁 시에는 금융위원회 사전보고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